

국가세무총국 <코로나 19 방역기간 반피세 관련 Q&A> 발표

2021년 11월

Issue 24

개요

코로나 19는 다국적 기업의 운영에 전례 없는 도전과 불확실성을 가져왔는데, 이전가격 위험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한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12월 18일 <코로나 19 이전가격 가이드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이하 "가이드">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BEPS 참여 국가/지역의 합의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호주¹, 싱가포르², 뉴질랜드³, 홍콩⁴ 등 국가/지역은 각각 경제적 불확실성 시기하의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치에 대한 현지 해석과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STA") 국제세무사(International Tax Department)는 올해 9월 30일, 홈페이지의 "'6 안정' '6 보장' 납세자 돕기 (助力'六稳' '六保' 纳税人在行动)"란에 Q&A 형식으로 <코로나 19 방역기간 반피세 관련 Q&A>(이하 "<Q&A>")⁵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STA가 세무기관과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전가격 관점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을 분석할지에 대해 처음으로 서면 발표한 가이드성 제안입니다.

상세 내용

<Q&A> 해석

STA 국제세무사는 <Q&A>에서, **이전가격 관리, 서비스, 조사** 3가지 방면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이전가격 조사

Q1: 코로나 19는 기업의 생산 운영과 그룹 내 특관거래에 모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기관은 어떻게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합니까?

STA 답변: 코로나 19 가 각 산업 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서로 상이하며, 일부 산업 내 기업에는 비교적 큰 위기를 가져온 반면, 일부 산업 내 기업에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사 진행 시, 독립거래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가 기업 특관거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PwC's View: OECD 의 <가이드>가 코로나 19 를 “재해리스크(Hazard risk)”로 분류한 점을 감안하여, 세무기관과 다국적 기업은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해당 위험이 어떻게 통제된 거래를 통해 각 특관자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A>에서 STA 또한 독립거래원칙을 적용하여 코로나 19 가 기업 특관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OECD 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OECD <가이드>의 더 자세한 내용은 PwC Global Tax Newsflash 2021. 01: OECD <코로나 19 영향하의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⁶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기업의 코로나 19 로 인한 손실을 고려합니까?

STA 답변: 세무기관은 기업의 기능/위험, 특관거래 특징, 산업 특성, 비교가능회사 상황 등의 요인을 결합하여 이전가격 조사 중 코로나 19 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으로 발생한 별도의 지출 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증가한 운영비용 등에 대해, 세무기관은 비교가능분석 시, 독립된 제 3 자간 관련 원가/비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점을 조정합니다. 기업들은 관련 원가/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측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PwC's View: OECD <가이드>는 “코로나 19 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영업손실 및 방역 관련 지출 할당 방법” 문제를 분석할 때,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특정 비용/원가를 특관자간에 분배할 때, 독립된 제 3 자간 상업 거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19 방역기간 중 매출/수익의 변동이 비교적 큰 회사, 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은 회사는 독립된 제 3 자간 거래와의 수평적 비교와 과거연도 수치의 수직적 비교를 통해 해당 변동이 코로나 19 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 및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계량화 분석을 통해 해외 특관자간 관련 별도 원가/비용을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로 인한 가동 중단,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하락, 물류비용 증가, 재고평가손실, 인건비 및 방역지출 증가 등은 모두 각 특관자간의 기능/위험 분석과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당기 이익에 대한 영향을 공정하게 측정하고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은 방역 기간 중 손실이 발생했고 단순한 기능/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기능/위험과 수익배분이 상호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세무총국공고[2017]6 호(이하 “6 호 공고”)는 “해외 특관자를 위해 내료가공 또는 진료가공 등 단순한 제조 업무를 하거나 유통, 계약 R&D 업무 등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익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이전가격 법규에서는 상기 회사가 코로나 19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룹 이전가격정책에서 벗어난 경우, 세무기관의 질의와 잠재적인 이전가격 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A>는 회사가 상세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준비했다는 가정 하에, 주관 세무기관이 이전가격조사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차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합니다. 이는 STA 가 코로나 19 가 다국적 기업에게 가져온 Challenge 에 대해 이해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전가격 위험 관리를 지지한다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가 기업에 큰 이익 파동을 가져오는 “금종조(金钟罩, 신체를 강화하는 권법 기술)”나 “철포삼(铁布衫, 칼을 피하는 권법 기술)”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Q&A>는 광범위한 정성적 설명과는 달리 비용 및 비교가능 분석 등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이전가격 위험 관리에 대해 더 높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wC 는 비교적 크게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상세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중국 이전가격조사의 10 년 소급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관련 지원 문서를 보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전가격 관리

Q3: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 년 회사의 이익 수준이 크게 변동된 경우, 동기자료 로컬문서 준비 시 어떤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까?

STA 답변: <국가세무총국 특관 신고 및 동기자료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42 호, 이하 “42 호 공고”) 제 14 조 4 항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로컬문서 준비 시 전염병이 특관거래, 가치사슬 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명시해야 하며, 비교가능분석 진행 시 동일 연도, 지역, 산업, 제품, 기능/위험의 비교가능 대상 데이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염병이 산업 이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PwC's View: 갑작스런 코로나 19 의 발생은 이전가격 비교가능 분석에 큰 도전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Q&A>는 동기자료에 대해 더 자세하고 맞춤형 분석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더 높은 요건을 제시했으며 효과적으로 비교가능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크나큰 도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42 호 공고 요건에 따르면, 로컬문서는 특관거래 발생연도 이듬해 6 월 30 일 이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동기자료는 세무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기자료 준비 시 정보의 지연성으로 인해 동일한 연도(즉, 2020 년)의 비교가능 데이터가 아직 대부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 바, 2019 년 및 더 이전 연도의 공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비교가능 데이터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2020 년 로컬문서 작성을 마친 상태이며, 일부 기업들의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기자료 로컬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의 영향을 크게 받은 기업의 경우, 이번 <Q&A>의 지침에 따라 2020 년 동기자료 로컬파일을 적절히 재검토할 수 있으며, 주관 세무기관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여 관련 분석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세무시스템이 다국적 기업의 이익 수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위험 지표 설정을 통해 특관거래에 큰 변화가 발생한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비교적 큰 이전가격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세무기관의 후속적인 위험관리조치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관자 거래가격 또는 이익 수준이 비교가능 분석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는 회사는 해당 산업, 지역, 그룹 자체 배경 등의 특징을 종합하여 맞춤형 추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발생했던 예측불가한 중대 사건(예: 2009 년 금융 위기 등) 발생 시기가 대상회사, 비교가능 회사에 미친 영향, 특수 시기 회사 경영에 대한 중대 변화를 환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기업 영업 실적 감소가 비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이익 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전가격 관리감독의 잠재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서비스

Q4: 회사가 향유하는 코로나 19 관련 정부 보조 정책이 특관거래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STA 답변: 코로나 19 방역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임대료, 세금, 용자 등 방면에서 일련의 보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보조 정책의 이전가격조치에 대한 영향은 주로 비교가능성분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가격문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전가격 분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독립거래원칙을 준수하고 비교 가능한 요소를 식별하며, 비교 분석 결과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PwC's View: <Q&A>와 OECD <가이드>의 “정부 보조와 지원항목”에 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기업은 정부 보조 정책의 회계처리 방식을 분석해야 합니다(예: 해당 보조가 당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어떤 계정이 영향을 받는지 등). 예를 들어, 방역 관련 보조금이 “영업외수익”으로 산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이전가격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역 관련 보조금이 특관거래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보조금으로 특관자의 미지급금을 상계한 경우 등), 방역 보조금의 경제 관련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이전가격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세무기관은 우수한 방역 능력, 특수한 정부 방역 지원이 지역특수요소의 일부이며 회사가 그 보상 또는 기여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PwC 는 일부 국가/지역의 세무기관(예: 싱가포르세무국)에서 독립된 제 3자라면 상업적 이유에서 정부의 방역 보조금 관련 수익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부 보조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 관련 수익을 특관자가 독식한다든지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Q5: 이미 체결된 APA 와 관련하여, 실행 기간 중의 코로나 19 영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STA 답변: 코로나 19 로 인해 APA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코로나 19 가 APA 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관 세무기관은 코로나 19 가 야기한 실질적인 변화가 APA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 분석해야 합니다. 일방 APA 의 경우, 기업과 APA 정정 또는 종료를 협상할 수 있으며, 쌍방/다자간 APA 의 경우, STA 에 보고하여 STA 가 조세협정 상대방 국가 세무당국과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PwC's View: <국가세무총국 APA 관리 보완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64 호, 이하 "64 호 공고")에는 이미 APA 실행 기간 중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알아야 할 대응 메커니즘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PA 실행 기간 중 APA 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변화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해당 변화가 APA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PA 협의서>는 통상적으로 기업 경영 기본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사항에 대해 "핵심 가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Q&A>는 코로나 19 가 APA 실행 회사의 경영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여 핵심 가정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실행 기간 내 즉시 세무기관과 소통하고, 보충 분석 자료와 APA 지속 실행을 위한 솔루션을 제출하여 세무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코로나 19 가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점은 OECD <가이드>의 관련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의 지난 세무 실무 경험으로 볼 때, 기업이 정상적으로 존속되는 상황에서 APA 의 실행이 중단되거나 재체결되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PwC 는 중국 세무기관이 코로나 19 로 인해 실행중인 APA 에 대해 대규모의 개정이나 실행 중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세무국과 기업은 갱신 단계에서 코로나 19 를 포함한 경제적 환경이 회사의 특관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핵심 요약

2020 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 의 발생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서부터 운영 및 공급 사슬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STA 국제세무사가 발표한 <Q&A>는 일상적인 이전가격 관리에 대한 흔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면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Q&A>는 코로나 19 로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기업들이 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이전가격 위험을 관리하며 세무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전가격 서비스 성과를 견고히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Q&A>는 또한 주관 세무기관이 독립거래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의 영향을 상황에 따라 재량껏 판단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Post-BEPS 시대에 중국 세무관리가 조세환경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우호적으로 변했음을 반영하며, 코로나 19 환경에서 더욱 융통성 있는 이전가격 관리를 실행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OECD <가이드>의 관련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Q&A>는 매우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각 주관 세무기관이 <Q&A>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집행할지는 일정 수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 19 발생 중/이후의 이전가격 사항을 정리하고, 독립된 제 3 자 시장의 상황 및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 기록해 두는 한편, <Q&A>에 따라 합리적인 이전가격 분석을 진행하여 관련 이전가격 위험 사항에 대한 솔루션과 전체 이전가격 조정 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석

1. Australian Taxation Office 공식홈페이지: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In-detail/Transfer-pricing/COVID-19-economic-impacts-on-transfer-pricing-arrangements/>
2.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공식홈페이지: <https://www.iras.gov.sg/irashome/COVID-19-Support-Measures-and-Tax-Guidance/Tax-Guidance/Transfer-Pricing/>
3. New Zealand Inland Revenue Department 공식홈페이지: <https://www.ird.govt.nz/international-tax/business/transfer-pricing/practice-issues/covid-19>
4. 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 공식홈페이지: https://www.ird.gov.hk/eng/tax/tia_covid19.htm
5. 중국국가세무국 공식홈페이지: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44/c101510/c101520/c5169462/content.html>
6. PwC Global Tax Newsflash 2021 issue 01 참고 <https://www.pwccn.com/zh/tax/publications/intl-tax-newsflash-jan2021-1.pdf>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TP) 최지혁 (86) (10) 6533-3676 jihyuk.j.choi@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정자현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n.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2021年11月2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威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1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